|  |  |  |
| --- | --- | --- |
| **래료가공기업의 법인기업 전환**  **수입설비 조세문제에 대한 공고**  해관총서 공고 2012년 제7호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2011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사이에 법인자격을 구비하지 않는 래료가공기업(독립적인 법인자격을 구비하지 않는 래료가공 조립공장을 가리킴. 이하 래료가공공장이라 함)이 그 외국인투자자가 제공한 가치불평가 전부 설비로 투자하여 법인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또는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사이에 당해 기업의 모든 가치불평가 설비로 투자하여 래료가공공장 전체가 동일 투자자의 기 설립 법인기업에 편입되는 경우, 2008년 12월 31일 및 그 전에 이미 가공무역 비안(備案) 수속을 마치고 2009년 6월 30일 및 그 전에 수입하였으나 아직도 해관 감독관리 기한 내에 있는 가치 불평가 설비는 관세와 수입단계 증치세 보완 납부를 면제한다. 2008년 9월 9일부터 2009년 6월 30일 사이에 래료가공공장 전체가 이미 법인기업으로 전환된 경우, 그 법인기업에 이미 이월되었으나 아직도 해관의 감독관리 기한 내에 있는 가치불평가 설비는 투자처리를 할 수 있으며, 관세와 수입단계증치세 보완 납부를 면제한다. 집행중의 관련 문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상기 조세우대정책을 적용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외국인투자 법인기업은 2012년 12월 31일 전에 모든 가치불평가 설비와 관련하여 기업 소재지 해관(이하 주관해관이라 함)에 일괄로 면세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해관의 심사승인을 얻은 후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화물 감면세 관리방법》(해관총서 령 제179호)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수속을 밟아야 한다.  2. 해관에 감면세 수속을 신청할 때 가치불평가 설비의 신고금액은 당해 설비의 수입시의 신고가격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외국인투자 법인기업의 투자총액에 계상한다. 가치불평가 설비에 대한 해관의 감독관리 연한은 연속하여 계산한다.  3. 상기 정책 규정에 부합되는 가치불평가 설비의 감면세 심사승인 수속은 《감면세 관리시스템》에 넣어 관리하며 감독관리 방식은 감면설비 이월(코드: 0500), 징수면제 성질은 國批감면(코드 898)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화물 세금 징수면제 증명》(이하 세금 징수면제 증명이라 함) 비고 난에는 "래료가공 조립공장의 전환, 전환 번호: D×××수책"이라고 밝혀야 한다.  4. 상기 외국인투자 법인기업이 해관에 가치불평가 설비 감면세 심사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증서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외국인투자자가 제공한 모든 가치불평가 설비로 투자하여 법인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지방 시급 상무부서에서 발급한 래료가공공장의 외국인투자 법인기업 전환 심사승인 문건과 그 확인을 받은 가치불평가 설비리스트(원본)를 제출, 투자 전체가 동일 투자자의 기 설립 법인기업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지방 시급 상무주무부서에서 심사 승인한 래료가공공장 가공계약서 또는 보충협의서 및 그 확인을 받은 가치불평가 설비리스트(원본)를 제출  (2) 외국인투자 법인기업의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와 《영업집조》 사본(원본 대조)  (3) 관련 가공무역 가치불평가 설비수책 및 기존 수입통관서 사본  (4) 해관이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기타 문건.  5. 2011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사이에 래료가공공장이 그 외국인투자자가 제공한 모든 가치불평가 설비로 투자하여 법인기업을 신규 설립하는 경우, 또는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사이에 모든 가치불평가 설비로 투자하여 래료가공공장 전체가 동일 투자자의 기 설립 법인기업에 편입되는 경우 외국인투자 법인기업과 래료가공공장은 현행 규정에 따라 각각 수입, 수출화물 통관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통관신고서 "비안(備案)번호" 난에는 각각 《세금 징수면제 증명》 번호와 가공무역수책 번호를 기입해야 한다. 외국인투자 법인기업과 래료가공공장이 상기 형식의 통관수속을 밟은 후, 래료가공공장은 가치불평가 설비이월 수출화물 통관신고서를 지참하고 원 가치불평가 설비수책 비안(備案) 해관에 가서 가치불평가 설비수책 핵소수속을 밟아야 한다. 원 가치불평가 설비수책 비안(備案) 해관은 상기 가치불평가 설비이월 수출화물 통관신고서에 의거하여 핵소수속을 처리한다.  이 공고를 발표하기 전에 상기 래료가공공장이 이미 전부 가치불평가 설비로 투자하여 법인기업을 신규 설립하였거나 또는 그 전체가 동일 투자자의 기 설립 법인기업에 편입되어 래료가공공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투자 법인기업은 이 공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해관수속을 밟을 수 있다.  6. 2008년 9월 9일부터 2009년 6월 30일 사이에 이미 래료가공공장 전체가 법인기업으로 전환된 경우 이미 법인기업에 이월된, 아직 해관의 감독관리 기한 내에 있는 가치불평가 설비에 대해 외국인투자 법인기업은 현행 규정에 따라 수입과 수출 화물통관신고서를 각각 작성하고 통관신고서 "비안(備案)번호" 난에 각각 《세금 징수면제증명》 번호, 외국인투자 법인기업 및 래료가공공장 가공무역수책 번호를 기입해야 한다. 외국인투자 법인기업은 상기 형식의 통관신고 수속을 밟은 후 가치불평가 설비이월 수출화물 통관신고서를 지참하고 원 가치불평가 설비수책 비안(備案) 해관에 가서 가치불평가 설비수책 핵소수속을 밟아야 한다. 원 가치불평가 설비수책 비안(備案)해관은 상술한 가치불평가 설비이월 수출화물 통관신고서에 의거하여 핵소수속을 처리한다.  7. 2009년 7월 1일부터 이 공고를 반포하기 전에 래료가공공장이 이미 2008년 12월 31일 및 그 전에 가공무역수책 비안(備案)수속을 밟고 2009년 6월 30일 및 그 전에 수입한 일부 가치불평가 설비를 전부 동일 투자자의 기 설립 법인기업에 이월한 경우에는 2012년 12월 31일 전에 아직 이월하지 않은 가치불평가 설비를 동일 투자자의 기 설립 법인기업에 모두 편입시켜야 투자로 처리할 수 있으며, 아울러 관세와 수입단계증치세 보완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그중, 래료가공공장이 기 설립 법인기업에 이월한, 아직도 해관 감독관리 기한 내에 있는 가치불평가 설비는 이 공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해관수속을 밟아야 하며, 래료가공공장이 아직 이월하지 않은, 해관의 감독관리 기한 내에 있는 가치불평가 설비를 기 설립 법인기업에 이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공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해관수속을 밟아야 한다.  8. 2009년 1월 1일 및 그 후에 신규 비안(備案)한 가치불평가 설비, 또는 2008년 12월 31일 전에 비안(備案)하였으나 2009년 7월 1일 및 그 후에 수입한 가치불평가 설비로 출자하여 외국인투자 법인기업을 설립한 경우, 신규 설립 외국인투자 법인기업의 업무범위가 국가의 장려류 산업이나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 우위산업 프로젝트에 속하면 현행 정책의 규정에 따라 관세면제 이월수속(전에 수입할 때 수입단계증치세를 징수한 경우에는 이월 시 더 중복 징수하지 아니함)을 밟을 수 있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2012년 2월 6일 |  | **关于来料加工企业转型为法人**  **企业进口设备税收问题**  海关总署公告2012年第7号      　　经国务院批准，自2011年7月1日至2012年12月31日，对不具备法人资格的来料加工企业（指不具有独立法人资格的来料加工装配厂，以下简称来料加工厂）以外商提供的全部不作价设备作为投资设立法人企业的，或在2009年7月1日至2012年12月31日期间，将该企业全部不作价设备作为投资整体转入同一投资方已设立的法人企业的，准予对其在2008年12月31日及以前已经办理了加工贸易备案，并且在2009年6月30日及以前申报进口尚在海关监管期限内的不作价设备，免予补缴关税和进口环节增值税。在2008年9月9日至2009年6月30日期间已由来料加工厂整体转型为法人企业的，对已结转到法人企业尚在海关监管期限内的不作价设备，准予作为投资处理，免予补缴关税和进口环节增值税。现就执行中的有关问题公告如下：  　　一、申请享受上述税收优惠政策规定的，外商投资法人企业应在2012年12月31日之前将全部相关不作价设备一次性向企业所在地海关（以下称主管海关）提出减免税申请，经主管海关审批同意后，按照《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减免税管理办法》（海关总署令第179号）的有关规定办理相关手续。  　　二、向海关申请办理减免税手续时，不作价设备的申报金额不得高于该设备原进口时的申报价格，并且计入外商投资法人企业的投资总额。有关不作价设备的海关监管年限连续计算。  三、符合上述政策规定的不作价设备的减免税审批手续纳入《减免税管理系统》管理，监管方式为：减免设备结转（代码：0500）；征免性质为：国批减免（代码898）；《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征免税证明》（以下简称  《征免税证明》）备注栏须注明“来料加工装配厂转型，转自编号D×××手册”。  　　四、上述外商投资法人企业在向海关申请办理不作价设备减免税审批手续时须提供以下单证材料：  　　（一）对于以外商提供的全部不作价设备作为投资设立法人企业的，应提供地市级商务部门关于同意来料加工厂转型为外商投资法人企业的相关批准文件及经其确认的不作价设备清单（原件）；对于作为投资整体转入同一投资方已设立的法人企业的，应提供地市级商务主管部门审核批准的来料加工厂加工协议或补充协议及经其确认的不作价设备清单（原件）。  　　（二）外商投资法人企业的《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和《营业执照》复印件（需提交原件验核）；  　　（三）有关加工贸易不作价设备手册及原进口报关单复印件；  　　（四）海关要求提供的其他文件。  　　五、在2011年7月1日至2012年12月31日期间，来料加工厂以外商提供的全部不作价设备作为投资新设立法人企业的，或在2009年7月1日至2012年12月31日期间，将来料加工厂全部不作价设备作为投资整体转入同一投资方已设立的法人企业的，外商投资法人企业和来料加工厂按现行规定分别填制进、出口货物报关单，在报关单“备案号”栏目分别填报《征免税证明》编号和加工贸易手册编号。外商投资法人企业和来料加工厂办理上述形式报关手续之后，由来料加工厂凭不作价设备结转出口货物报关单到原不作价设备手册备案海关申请办理不作价设备手册核销手续。原不作价设备手册备案海关凭上述不作价设备结转出口货物报关单办理核销手续。  　　对于在本公告发布之日前，上述来料加工厂已将全部不作价设备作为投资新设立法人企业或整体转入同一投资方已设立的法人企业，且来料加工厂已不再续存的，可由外商投资法人企业按照本公告第六条的规定办理相关的海关手续。  　　六、在2008年9月9日至2009年6月30日期间已由来料加工厂整体转型为法人企业的，对已结转到法人企业尚在海关监管期限内的不作价设备，外商投资法人企业按现行规定分别填制进、出口货物报关单，在报关单“备案号”栏目分别填报《征免税证明》编号、外商投资法人企业及来料加工厂的加工贸易手册编号。外商投资法人企业办理上述形式报关手续之后，凭不作价设备结转出口货物报关单到原不作价设备手册备案海关申请办理不作价设备手册核销手续。原不作价设备手册备案海关凭上述不作价设备结转出口货物报关单办理核销手续。  　　七、对于在2009年7月1日至本公告发布前，来料加工厂已将其在2008年12月31日及以前办理了加工贸易手册备案，并且在2009年6月30日及以前申报进口的部分不作价设备结转到同一投资方已设立的法人企业的，应在2012年12月31日前将尚未结转的不作价设备，全部转入同一投资方已设立的法人企业，方可作为投资处理，并免予补缴关税和进口环节增值税。其中，来料加工厂已经结转到已设立的法人企业尚在海关监管期限内的不作价设备，按本公告第六条规定办理相应的海关手续；来料加工厂将尚未结转且在海关监管期限内的不作价设备转入已设立的法人企业的，按本公告第五条规定办理相应的海关手续。  八、2009年1月1日及以后新备案的不作价设备或者以在2008年12月31日以前备案但在2009年7月1日及以后申报进口的不作价设备出资设立外商投资法人企业，新成立的外商投资法人企业所从事的项目属于国家鼓励类产业条目或中西部地区外商投资优势产业项目的，可以按照现行政策规定办理免征关税的结转手续（原进口时已征收进口环节增值税的，结转时不再征收）。  特此公告。    二○一二年二月六日 |